

주식회사 에이치엘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매출주선 계약서

주식회사 에이치엘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본 회사"라 한다) 및 매출주주들(이하에서 정의됨)이 보유한 본 회사의 기명식 제1종 종류주식 750,000주(이하 "본 주식"이라 한다)를 일반 공모 방식으로 매출함에 있어 주식회사 아이엠증권(이하 "매출주선회사"라 한다)와 다음과 같이 매출주선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 (정의)

- ① "매출주선회사"라 함은 본 주식의 매출과 관련하여 공모주식의 매출주선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주식회사 아이엠증권을 말한다.
- ② "매출주주들"이라 함은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 하나증권 주식회사를 말한다.
- ③ "금융위"라 함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가 현재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④ "본 신고서"라 함은 본 회사가 공모주식의 공모를 위하여 금융위에 제출하고 정정신고서의 내용을 반영한 증권신고서를 말한다.
- ⑤ "공모주식"이라 함은 제3조에서 정하는 주식을 말한다.
- ⑥ "본 주식"이라 함은 공모주식을 말한다.
- ⑦ "사업계획서"라 함은 본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본 회사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또는 등록) 서류에 포함된 본 회사의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 ⑧ "투자설명서"라 함은 공모주식의 매출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23조 내지 제124조 규정에 의하여 본 회사가 금융위에 제출하고 투자자에게 공시하는 투자설명서와 예비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가 있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는 본 회사의 사업계획서에 기초하여 작성된 자료이며, 공모주식의 청약권유를 위하여 투자자에게 제공될 투자안내자료를 말한다.



- ⑨ "한국거래소"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거래소를 말한다.
- ⑩ "투자대상자산"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9길 40에 소재한 센터플레이스를 말한다.

제2조 (매출의 주선)

- ① 본 회사는 매출주주의 본 주식을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매출하기로 하여 매출주선회사에게 공모주식 매출주선업무를 위탁하고 매출주선회사는 본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있음을 조건으로 이를 수락한다.
- ② 본 주식을 매출함에 있어 매출주선회사는 일반공모 청약이 완료된 후 청약된 주식의 총수("총 청약주식수")가 본 계약에 의하여 매출하고자 하는 주식의 총수("총 매출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총 청약주식수 전부를 배정하고, 미달한 잔여주식은 미매출 처리한다.

제3조 (본 주식)

- ① 본 계약에 의하여 공개 매출하는 공모주식은 매출주주들이 보유한 액면가 금 5,000원인 기명식 증류주식으로 총 750,000주이다. 공모주식은 주당 금 40,000원에 매출하며 본 매출의 총 매출금액은 금 30,000,000,000원이다.

매출주주	매출주식수	주당매출가액	매출금액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375,000 주	40,000원	15,000,000,000 원
하나증권(주)	375,000 주		15,000,000,000 원

제4조 (청약 등)

- ① 매출주선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모주식의 청약을 실시한다. 본 항에서 정하지 않은 청약의 실시와 관련된 절차, 방법에 대해서는 매출주선회사가 정한 바에 따른다.

1. 청약기간은 2024년 12월 09일 ~ 11일(3영업일)로 한다.
2. 공모주식 청약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한다.



3. 청약증거금은 제6조 제①항의 주금납입기일에 공모주식의 납입금으로 대체한다. 청약증거금이 납입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2024년 12월 12일에 해당 청약사무 취급처에서 환불한다. 상기 초과금을 청약자에게 지급할 때까지 유지하는 기간에 대한 이자는 청약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4. 청약사무 취급처는 (주)아이엠증권 본·지점으로 한다.
5.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하며,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한다.
6. 청약자의 1인당 청약한도는 1,000주 이상 750,000주 이내로 한다.
7. 청약단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1,000주 이상 50,000주 이하는 50주 단위
 - 나)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는 100주 단위
 - 다) 100,000주 초과는 500주 단위
8.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분에 대하여는 1인당 청약한도만큼 청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공모주식의 배정)

매출주선회사는 공모주식의 매출과정에서 다음 각 항과 같이 공모주식을 배정한다.

- ① 총 공모주식수 750,000주(금 30,000,000,000원) 전체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 구분 없이 배정한다.
- ② 총 청약주식수가 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 ③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한 경우 청약물량 전부를 배정한 후 최종 잔여주식은 매출하지 아니한다.
- ④ 상기 내용 이외의 것은 관련 법령 및 금융위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다.



제6조 (납입 및 주권교부 등)

- ① 본 주식 매매대금의 납입기일은 2024년 12월 12일로 한다.
- ② 매출주주들은 각각 납입기일에 자신이 보유한 본 주식을 매출주선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고 하여야 하며, 매출주선회사는 납입기일에 해당 청약자의 계좌에 각 해당주식을 입고하여야 한다.
- ③ 매출주선회사는 납입기일에 본 주식 매매대금을 매출주주들이 통보해준 방식으로 배분하여 매출주주들이 별도로 지정한 각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단, 매출주선회사는 본 주식 매매대금 송금 시 매출주주들의 요청에 따라 본 주식 매매대금에서 본 계약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비용 및 수수료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송금할 수 있다.

제7조 (공모주식에 관한 공고)

- ① 매출주선회사는 본 회사의 동의를 받아 청약안내의 공고를 본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한다.
- ② 매출주선회사는 청약결과 배정공고 및 초과청약금 환불에 대한 통지를 매출주선회사 홈페이지(㈜아이엠증권 : <http://www.imfnsec.com>)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행하며, 이로써 청약자에 대한 개별 통지에 갈음한다.

제8조 (매출주선회사의 주금납입의무 발생)

본 계약 제6조 제①항에 의한 매출주선회사의 주금납입의무는 납입기일 전까지 본 회사 및 매출주주들이 본 계약상 납입기일까지 이행하여야 할 의무이행 및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항의 충족을 전제로 한다.

- ① 본 회사 및 매출주주들에 의한 본 계약서상 진술 및 보장 사항이 본 계약서 체결일 및 납입기일 현재 진실하고 정확하며, 본 회사와 매출주주들은 본 계약서상 이행 또는 충족되어야 할 모든 합의사항과 조건을 준수하였고, 본 계약서상 약속사항의 위반이 없다.
- ② 매출주선회사는 본 회사에게 본 계약 체결 이후 본 신고서에 변경된 내용이나 본 회사의 재무상태에 변화가 없고, 본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재확인하는 내용 및 기타 본 계약이나 그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회계사의 확인서 또는 법무법인(변호사) 등의 법률의견서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③ 본 신고서 및 투자설명서가 금융위에 적법하게 제출되고, 본 신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금융위의 명령이 발동되지 않았고, 동일한 목적의 분쟁절차가 개시되거나 개시될 것으로 우려되지 않는다. 금융위의 모든 추가 정보제공 요청에 따른 추가적인 정보의 제공은 합리적이고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이루어졌다.

제9조 (매출주선회사의 보장 및 확약)

- ① 매출주선회사는 공모주식을 투자자에게 매출하는 과정에서 본 회사가 작성한 투자설명서를 사용하여 청약에 권유한다.
- ② 매출주선회사는 본 회사가 사전 동의한 경우 및 법령에 근거하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을 본 계약에 따른 매출주선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 ③ 매출주선회사는 공모주식의 공모와 관련된 투자설명서, 공고 기타 매출과 관련된 마케팅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하여 사전에 본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단, 본 회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본항에 따른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제10조 (본 회사의 보장 및 확약)

본 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일, 청약일과 납입기일 각 날짜 현재에 다음 각 호의 1을 진술, 보장 및 확약한다.

- ① 본 회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최될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본 주식의 매출을 승인하였고, 그 이후 매출주선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주식의 매출조건 중 본 계약에 의한 매출주선회사의 매출주선 업무 수행 또는 투자자의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한 사항"이라 한다)의 변경이나, 매출취소 또는 매출과 관련하여 추가로 어떠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된 결의를 하지 않았다.
- ② 본 회사가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은, 본 회사의 정관과 본 회사가 일방 당사자인 다른 계약 및 협약 등의 어느 조항과도 상충되지 않는다.
- ③ 본 회사는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본 회사의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또는 본 회사의 설립을 위하



여 i) 본 회사가 체결하였거나 작성한 제반 계약서 및 ii) 기타 자료(사업계획서, 투자설명서, 증권신고서 등을 포함함. 이하 같다) 및 iii) 제3자(매도인 및 감독관청을 포함함. 이하 같다)로부터 받은 문서 또는 자료 중 중요한 사항이 포함된 문서 또는 자료를 매출주선회사에게 제공하였다.

- ④ 본 신고서는 청약기간 이전에 효력이 발생하였고, 효력이 발생한 이후 금융위에서 본 신고서에 대한 어떠한 정정지시 또는 그러한 지시를 계획하고 있다는 통보를 하지 않았다. 본 신고서 및 사업계획서에는 투자자들이 본 주식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본 회사, 관계인 및 본 주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며, 본 신고서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는다.
- ⑤ 본 회사가 공모주식의 공모와 관련하여 금융위에 제출하는 본 신고서, 투자설명서 등의 자료 또는 서류가 관련 법령, 규정, 준칙, 지침 등을 위반하지 아니한다.
- ⑥ 본 회사는 매출주선회사와의 사전 동의 없이 본 신고서를 수정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정정신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지 않고, 공모주식의 공모가 완료될 때까지 본 신고서의 수정을 필요로 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⑦ 본 회사는 공모주식의 공모기간 동안 본 계약 체결 이후에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또는 본 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본 회사가 체결하거나 작성하는 제반 계약서 및 중요한 사항이 포함된 기타 자료는 미리 그 내용을 매출주선회사에 제공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미리 매출주선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⑧ 본 회사는 공모주식의 공고기간 동안 본 계약 체결 이후에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또는 본 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본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제반 계약서 및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중요한 사항이 포함된 기타 자료는 체결 또는 수령 즉시 매출주선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⑨ 본 계약에 따라 본 회사가 매출주선회사에게 제공한 제반 계약서 및 기타 자료에 포함된 정보에 허위사실이 존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 또는 매출주선회사 또는 투자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본 회사가 매출주선회사에게 제공한 모든 예측자료는 합리적 가정 또는 판단의 근거가 있으며 그 예측의 수정 또는 근거의 변경을 요구하는 상황이 없다.
- ⑩ 본 회사는 본 회사가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를 즉시 매출주선회사에게 통보한다.



제11조 (매출주주들의 보장 및 확약)

각 매출주주들은 개별적으로 본 계약의 체결일, 청약일과 납입기일 각 날짜 현재에 다음 각 호의 1을 진술, 보장 및 확약한다.

- ① 각 매출주주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본 주식의 매출을 승인하였고, 그 이후 매출주선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주식의 매출조건 중 본 계약에 의한 매출주선회사의 매출주선 업무 수행 또는 투자자의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한 사항"이라 한다)의 변경이나, 매출취소 또는 매출과 관련하여 추가로 어떠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된 결의를 하지 않았다.
- ② 각 매출주주는 그가 매출할 본 주식의 유일한 소유자로서 본 계약서에 따라 본 주식을 매도, 양도, 이전 및 교부할 완전한 권리, 권한 및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어떠한 자도 매출주주들을 구속하는 어떠한 계약에 의거하여 그러한 주식을 매출주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취득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다. 매출주선회사가 제6조 제1항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자신이 보유한 본 주식을 해당 청약자에게 교부되도록 할 것이고, 본 주식은 본 계약서에 따라 아무런 담보, 부담 및 청구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로 각 청약자에게 이전될 것이다.
- ③ 각 매출주주는 본 회사를 매출주주의 합법적인 대리인("매출대리인")으로서, 본 주식의 공모를 이행하기 위한 또는 그에 관련한 여하한 계약, 증서, 통지, 통신 및 기타 서류를 서명하고 교부할 수 있고, 매출주주들의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한도에서 본 주식의 매각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위임장("위임장")에 적법하게 서명하여 이를 본 회사에 교부하였다. 각 매출주주는 동 위임장에 의한 매출대리인의 선임을 취소하지 않는다.
- ④ 각 매출주주는 대한민국 법률 및 본 주식을 매출하는 것과 관련한 적용 가능한 법규를 모두 준수하고, 본 계약서 및 위임장 체결에 관한 완전한 권리, 권한 및 자격을 갖고 있으며, 본 계약서에 따른 거래는 적법하고 유효하게 이루어졌다.
- ⑤ 각 매출주주의 본 계약서의 서명, 교부 및 이행은 법률, 규정, 당해 매출주주의 정관 및 설립 관련 서류에 상충되지 아니하고 당해 매출주주가 구속되는 계약에 중요한 점에서 상충되지 아니하며, 본 계약서 또는 본 신고서에 언급되거나 기취득한 것을 제외하고는 추가적으로 정부 또는 감독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인허가나 그에 대한 보고 및 제3자로부터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 ⑥ 각 매출주주는 납입기일에 자신이 매도한 본 주식을 매출주선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고한다.
- ⑦ 각 매출주주는 본 계약서를 위반한 경우 이를 즉시 매출주선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업무 분장)

- ① 매출주선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공모주식의 매출주선업무에 따른 제반 사무를 수행한다.
- ② 본 회사는 증권신고서 사본 및 투자설명서를 본 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매출주선회사에게 제공하며, 매출주선회사는 본 주식 청약에 필요한 제 서식을 지체 없이 작성하여 그 내용에 대한 본 회사의 동의를 얻은 후 각 청약사무 취급처에 배포한다.

제13조 (공모관계 일정 등의 변경)

본 회사는 본 신고서의 효력발생 등과 관계된 사유로 본 주식의 매출에 관한 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출주선회사와 협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제14조 (해지)

- ① 본 회사와 매출주주 및 매출주선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 타 계약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단, 다음 중 제2호 및 3호의 경우 그 해지사유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본 계약 당사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 계약 체결 후 한국거래소의 모든 주식거래가 중단되거나 거래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진 경우 또는 증권시장, 본 회사 또는 국내경제에 중요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어 본 계약에서 예정한 본 주식의 매출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회사와 매출주주 및 매출주선회사가 합의한 경우
 2. 본 회사와 매출주주 및 매출주선회사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서상 진술 및 보장사항, 협약사항을 위반하는 등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본 회사와 매출주주 및 매출주선회사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고 그 위반이 경미하지 아니하고 치유될 수 있는 경우로서 귀책사유가 없는 당사자로부터 위반의 치유의 통지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동 위반이 치유되지 않은 경우
 4. 본 계약 체결 이후에 본 회사의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또는 본 회사의 설립과 관련한(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을 포함하여) 중요한 사항에 문제가 발생 또는 발견된 경우. 단, 본 호에 따른 해지는 제6조 제①항에 따른 납입기일 이전에 한한다.



5. 전쟁이나 테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투자자로부터 청약을 받거나 본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6. 시스템 장애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지급유예 상황이 발생 또는 은행업무가 중단되거나, 또는 한국거래소에서 일체의 유가증권거래가 제한되어 투자자로부터 청약을 받거나 본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7. 본 계약 체결 후 제3자 또는 법원,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본 주식의 매출 절차의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어 본 계약에서 예정한 본 주식의 매출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매출주선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8. 기타 증권시장, 채권시장, 부동산시장 기타 국내 경제 또는 부동산 관련 세제에 중대하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여 본 계약에 따른 본 주식의 매출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매출주선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 ② 제①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 전까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하였거나 또는 발생한 비용은 해지귀책사유가 있는 본 계약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비용지급의무 부담자는 해당 비용청구서의 수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어느 당사자에게도 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발생한 비용은 제16조에서 부담하기로 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5조 (계약해지 이후 유효조항)

본 계약의 제14조 제2항, 제18조, 제19조 기타 성질상 본 계약의 해지 이후에도 그 효력을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본 계약의 각 조항은, 본 계약의 해지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제16조 (공모비용)

본 주식의 매출에 필요한 매출주선수수료 등 제반 공모비용은 매출주주들이 부담한다.

제17조 (매출주선수수료)

- ① 매출주주들은 공모 청약결과 최종 매출된 금액의 0.20%(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수수료로 매출주선회사에게 지급하며, 매출주주들은 각자 공모 청약결과 최종 매출된 금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분담한다.

- ② 매출주주들은 제6조 제①항의 납입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매출주선회사에게 본 조 제①항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18조 (책임부담)

- ① 본 계약 당사자 일방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타방 당사자 또는 그의 임직원에게 손해(변호사 비용을 포함한다)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방 당사자는 그 과실비율에 따라 그 책임을 분담하되, 이 경우 매출주선회사의 책임은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본 회사가 본 계약, 본 신고서 및 사업계획서, 투자설명서 등에 기재된 사항 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본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매출주선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제3자로부터 소송 또는 이의제기를 당한 경우 본 회사는 자신의 책임으로 매출주선회사 또는 그의 임직원을 면책시켜야 한다.
- ③ 제①항 및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의 처분 또는 그에 대한 불복신청이 있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의 판결 확정으로 인하여 어느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본 회사와 매출주선회사가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방 당사자는 그 과실비율에 따라 그 책임을 분담하되, 이 경우 매출주선회사의 책임은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 (분쟁)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관례 또는 본 회사와 매출주주 및 매출주선회사 간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본 회사와 매출주주 및 매출주선회사 사이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이 발생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할 것을 전속적으로 합의한다..



제20조 (기타)

- ① 본 계약 당사자들의 모든 합의내용은 본 계약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른 모든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내용은 효력을 상실한다.



- ② 본 계약에 따로 명시된 해당 조항을 제외하고는, 당사자간의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의 대상 업무에 관련된 모든 통지, 요구 및 연락은 서면으로 한다. 모든 통지, 요청 및 기타 연락사항은 수령인이 다음 각 호 수령 장소의 정상 근무 시간 동안 수령한 경우, 당일 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이외의 경우(당일 정상근무시간 이후 익영업일 전)에는 어떠한 통지, 요청 또는 기타 연락사항이라도 수령장소의 익영업일에 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주식회사 에이치엘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삼성동, 트레이드타워 28층)

참조 : 김준호

전화 : 02-6205-6968

팩스 : 02-6205-6970

전자우편 : junho.kim@hlcompany.com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11

참조 : 김광열

전화 : 02-6915-5243

팩스 : 026915-5803

전자우편 : kykim@ibks.com

하나증권 주식회사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참조 : 오재원

전화 : 02-3771-3895



팩스 : 02-3771-3123

전자우편 : jw-oh@hanafn.com

주식회사 아이엠증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66 (여의도동, iM증권빌딩)

참조 : 한백희

전화 : 02-2122-9385

팩스 : 02-2122-9390

전자우편 : han@imfnsec.com

(이하 기명날인을 위한 여백)



본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회사", "매출주주"와 "매출주선회사"가 계약서 4통을 작성하여 각자 날인한 후 1통씩 보관한다.

2024년 11월 12일

[본 회사]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2802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회사명 : 주식회사 에이치엘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이사 : 박 영 희 (인)



[매출주주]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11

회사명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 서 정 학 (인)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회사명 : 하나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 강 성 목 (인)



[매출주선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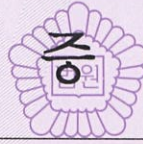
주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장로 121(온천동)

회사명 : 주식회사 아이엠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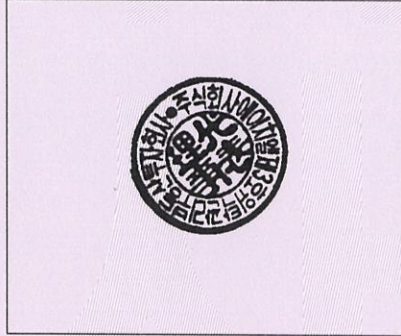
대표이사 : 성 무 용 (인)



인 감 증 명 서



법인등록번호 : 110111-8994801



상 호 : 주식회사 에이치엘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본 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2802호(삼성동, 트레이드타워)

대표이사 박영희
(750103-2539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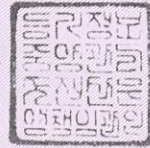
관할등기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이 인감은 등기소(과)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 책임관



수수료 1,000원 영수함.

-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인감증명서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하면, 발급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등기소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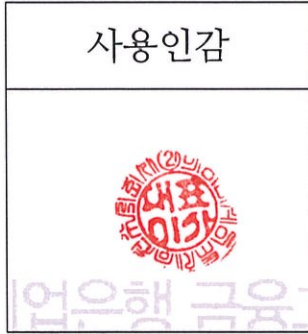
21200161110010201111104520002814094908R1K1D1K0L1S1 20

발급확인번호 OAYM-MMMX-ZAA7

- 1/1 -



사 용 인 감 계



위와 같이 당사의 사용인감을 이하의 목적에 사용함에 대하여 이를 허락합니다.

사용목적 : (주)에이치엘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매출주선계약서 체결

2024 년 월 일

IBK투자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 정 학 (인)



인 감 증 명 서

법인등록번호 : 110111-3905837



상 호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
본 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여의도동)
대표이사 서정학
(631015-1046710)

관할등기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이 인감은 등기소(과)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수수료 1,000원 영수함.

1.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인감증명서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하면, 발급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등기소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가능)

219055525190000031011045200328150059T3M1K1D1NOL1S1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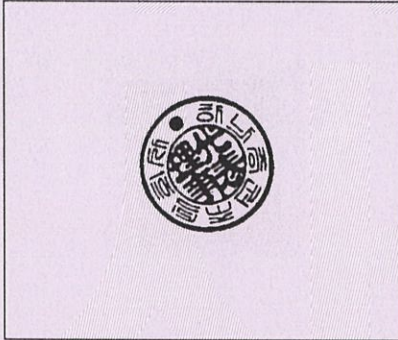
발급확인번호 DAYM-SKRA-FHX6

- 1/1 -



인 감 증 명 서

법인등록번호 : 110111-0208169



상 호 : 하나증권 주식회사
본 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여의도동)
대표이사 강성목
(640927-1350914)

제출처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용도	(주)에이치엘제 3 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매출주선계약 체결

관할등기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이 인감은 등기소(과)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24년 10월 21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수수료 1,000원 영수함.

1.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인감증명서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하면, 발급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등기소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가능)

216007223170101021011045200722190342TOM1K1D1S0L1S1 20

발급확인번호 QAYM-WJHX-NCM3



인 감 증 명 서

법인등록번호 : 180111-0093095



상 호 : 주식회사 아이엠증권 (iM SECURITIES CO., LTD.)

본 점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장로 121(온천동)

대표이사 성무용

(630101-1690723)

관할등기소 :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이 인감은 등기소(과)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수수료 1,000원 영수함.

-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인감증명서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하면, 발급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등기소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가능)

211055322190009021011045200920130940TOM1K1D1NOL8S1 20

발급확인번호 DAYM-SKKQ-FON2

- 1/1 -



위 임 장

(수 임 인)

성 명 : 주식회사 에이치엘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삼성동, 트레이드타워 28층)

당사는 상기 기재한 대리인에게 다음의 사항을 위임합니다.

- 다 음 -

매출주선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공모 진행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

(위 임 인)

회 사 명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11

대표이사 : 서 정 학



2024년 11월 12일

위 임 장

(수 임 인)

성 명 : 주식회사 에이치엘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삼성동, 트레이드타워 28층)

당사는 상기 기재한 대리인에게 다음의 사항을 위임합니다.

- 다 음 -

매출주선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공모 진행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

(위 임 인)

회 사 명 : 하나증권 주식회사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대표이사 : 강 성 목



2024년 11월 12일